요양(의료)급여비용 자율점검제 통보 안내

- 정맥마취-부위(국소)마취 자율점검 관련 -

자율점검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지급받은 요양(의료)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통보하여 요양기관 **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제도**입니다.

「**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공포 2018.9.28., 시행 2018.11.1.)**」 및 「**요양·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-215호, 시행 2020.9.24.)**」에 따라,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징금)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.

금번「정맥마취-부위(국소)마취」에 관한 자율점검은 ①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을 점검하여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.

이와 관련, 귀 원의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**(　　)년 (　)월부터 (　　)년 (　)월 진료분(기관별 상이)에 대하여 상기 내역을** 면밀히 검토 후,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**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**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은 **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**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자진신고 관련 안내

자율점검 대상 항목의 대상기간(36개월)이외 기간이나, **대상 항목이외 항목에 대하여 자진신고가 가능**하며,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 기간에 한하여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과장금)면제됩니다.

다만, 거짓청구 유형 및 외부요인(언론보도, 수사,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)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1) 자율점검 방법

[자율점검사항]

① 별도 산정 불가한 마취 후 정맥마취-국소(부위)마취로 청구 여부 점검

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 동일 여부 점검

③ 기타 정맥마취-국소(부위)마취 수가산정 관련 필요사항 점검

[점검대상기간]

① 6개월: 반기별 청구금액 상위기간에 해당하는 진료분

② 36개월: 착오 청구 확인 시 '18.1. ~ '20.12. (36개월) 진료분 범위 내 추가 점검

[제출기한]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

[제출서류]

①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

· 자율점검결과서

· 자료 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, 수술기록지, 마취기록지, 진료비 영수증 등

② 착오청구 **환수 동의 관련 서류** 제출 또는 **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**하여 제출

③ 그 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[제출방법]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

*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불가

** (주소)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[문의처]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

이은진팀장 (☎ 033-739-5906), 최시연차장 (☎ 5941)

정현영과장 (☎ 5935), 한아름과장 (☎ 5933), 최경애대리 (☎ 5926)

신문원대리 (☎ 5945), 황수연대리 (☎ 5914), 최선영대리 (☎ 5946)

2) 자율점검 운영 절차

※ 착오청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연계